

발행처——(주)조세신보사

발행인——김현덕
편집인——

인쇄——삼성인쇄(주)

대표전화——02-779-7800

광고 및 관리부——02-779-7704

FAX——02-779-6900

편집국——02-779-7810

세무/회계상담——02-779-7766

(오전) 10:00~12:00

(오후) 13:00~17:00

전국영업소

부 산 (051)643-4204 전 주 (063)252-5130
울 산 (052)275-5784 대 전 010-5305-8700
마 산 (055)294-4633 경 인 010-5305-8700
진 주 (055)752-2521 인 천 (032)544-5792
동마산 (055)231-7973 안 양 (031)442-3941
대 구 (053)654-9761 제 주 010-2342-0491
전 남 010-3645-0018

구독방법

본사 또는 전국영업소에 전화 또는 인터넷사이트로 신청해 주시면 매회 제때 받아보실 수 있으며 대금은 우리은행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우리은행 478-04-100215 (주)조세신보사

구독회비

· 월회비 30,000원
· 년회비 360,000원

조세저널 2016년 10월 6일 발행 매주 목요일 발행
등록 1971년 1월 8일 등록번호 서울 다06455
2003년 12월 23일 국유철도특별금승인 제122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충정로 3가)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한다.

www.intax.co.kr

· 개정가제식 · 신 · 구대사식

세법대전

· 신속 · 정확한 조세전문지

주간조세저널

· 새로운 세무 · 자세한 회계

월간TAX매거진

· 실무에 필수적인 해설서

텍스문고

· 대사식 · 핵심법령서

세법편람

■ 포커스

건축물 내진성능 수리 시 지방세 전액 면제 추진 4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발효 4

■ 세무자문

미환류 소득에 대한 투자금액 6
미환류소득 계산방법 변경 6
부수재화의 공급시 부가세 및 원천징수 7
세금계산서 발행 오류 8
여비·교통비 지급 9
감정평가차액 장부계상분 취득세 9

■ 세무정보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시행 10
2016 법인세 세무상담 사례 ① 16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23

■ 국세예규

분할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여부 등 29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에 보전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0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 31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 33
학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34
중기법상 중소 벤처기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미해당시 세액감면 적용 안됨 35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의 자회사 범위 36
상장폐지된 중견기업이 재상장된 경우 ‘최초 신규상장 중견기업’ 해당 안됨 37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 에누리 37

■ 지방세예규

법인합병시 최소납부세제 적용과표 39
분양계약 승계하여 산업단지 입주 경우 감면 안됨 39
학교용 부동산 수익사업 관련 취득세 추정여부 40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 사업장은 주민세 균등분 감면대상 아님 41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전 토지 취득시 감면여부 42
미술관 설립자가 아닌 대표자 명의 부동산 감면 42
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 경우도 추정대상 43
종업원분 주민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감면’에 해당 안됨 44
이전 공공기관의 증자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45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9.22.~2016.9.28.) 47
관세과세환율(2016.9.25.~2016.10.1.) 48

■ 안내

9월 총목차 49

▶ 건축물 내진성능 수리 시 지방세 전액 면제 추진

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주택 포함)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수리하여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현행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인 감면혜택이 취득세 100%·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설계하여 신축하는 경우에는, 현행 감면율인 취득세 10%·재산세 5년간 10%를 대폭 확대하여 취득세 50%·재산세 5년간 5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내진성능 건축물 감면대상 확대방안과 함께 금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10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혜택을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국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자동차 등이 소실·파괴되어 2년이내에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국제청도 9.2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9월, 10월)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및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 국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발효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지난달 7일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되었다.

이번 두 조약 발효의 의미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되었다는 것이다.

몇 년 전까지 일부 국가의 금융회사는 금융 비밀주의를 확고하게 유지하여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 금고로 활용되어 왔다.

2012년 스위스, 2013년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개정되고, 이제 홍콩까지 조세조약이 발효되어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홍콩 소재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발효로 미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를 본격 가동하여 역외탈세혐의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직까지 해외 계좌 및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한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제
외남

10월의 세무 · 회계 일지

세 무	
기한	항목
10(월)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인지세 납부(후납) 원천세 신고 납부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25(화)	201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2016.7~9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2016.7~9월분) 주세 신고 납부(2016.7~9월분) (유흥장소는 전월분)
31(월)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증여세 신고 납부(16.8월 양도, 7월 증여, 4월 상속) 2016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16.7~9월 지급분)
회 계	
기한	항목
14(금)	6월말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전자공시
17(월)	11월말 결산법인 분기보고서 제출 2월말 결산법인 반기보고서 제출 5월말 결산법인 분기보고서 제출



이성식 세무사

전화 : 02-779-7766

인터넷 : www.intax.co.kr

멤버 세무자문 사례



Q 미환류 소득에 대한 투자금액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에 있어 투자금액 산출시, 당사는 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건물 신축이나 증축이 아닌,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할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의 투자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하여 계속 영업할 경우
- 제3자가 운영하던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A 귀 문의의 경우 부동산은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물과 신축·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 및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문의와 같이 기존 건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을 참조하세요.

Q 미환류소득 계산방법 변경

2016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계산방법을 투자포함방식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를 법인세 수정 신고를 통해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투자금액 등 오계산으로 인해 미환류소득이나 초과 환류액이 잘못 신고 되었을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A 귀 문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금액 등

오계산으로 미환류소득이나 초과 환류액이 잘못 계산되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 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 부수재화의 공급시 부가세 및 원천징수

당사는 악기 및 음향기기를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악기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이벤트 목적으로 헤드폰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2. 부가세 및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귀 문의의 경우는 사전 고지에 의하여 악기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헤드폰을 증정한다면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6에 유사한 사안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0-0-6【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2016년 5월 19일 전자세금계산서 1,000,000원(공급가액)/100,000원(부가세)을 받아 7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 하였으나 뒤늦게 이중 발급된 것을 알아 2016년 8월 22일 2016년 5월 19일자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 1,000,000원(공급가액)/-100,000원(부가세)를 받았습니다.

질문 1) 1기 확정 부가세신고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 2) 가산세가 있는지요?

질문 3) 가산세가 있다면 종류와 금액(가산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당사는 매입처입니다. 잘못된 공급처에서 한 것 같은데 가산세가 있는지요?

A 귀 문의의 경우 2016년 제1기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중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소신고와 과소납부한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

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중으로 발급받은 것은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 오류

당사는 과·면세 겸업사업자입니다.

1기 확정기간에 과세재화(공급가 800 부가세 80)와 면세재화(공급대가 220)를 동시에 고객사에 납품하면서 담당자의 착오로 모두 과세재화(공급가 1000 부가세 100)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사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고객사는 매입공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9월중에 실거래는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공급가 -200 부가세 20)하고, 계산서(공급대가 220)을 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방법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 거래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사는 경정청구, 고객사는 수정신고를 해야 될 듯한데, 당사와 고객사에 적용되는 가산세항목이 궁금합니다.

A 귀 문의의 경우 제1기의 당초 공급일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면세공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대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257, 2005.2.22)

(동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1881, 95.10.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부가가치세과-875, 2013.9.26.)

****면세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계산서로 수정하여 발급받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회신)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목의 회선사업권을 부여받은 투자자가 동 회선사업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투자자가 동 회선사업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이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선사업권 취득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선사업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서삼 46015-11977, 2003.12.18)

Q 여비·교통비 지급

당사에서는 별도의 여비·교통비 지급 규정없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주유비를 실비청구(현금영수증)를 받아 지급하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비청구시에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은 개인별 매월한도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부분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귀 문의의 경우 실비청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실비청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감정평가차액장부계상분 취득세

감정평가차액부분을 장부상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실재 취득가액 : 1억

감정평가액 : 1억5천

A 귀 문의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참조) 단순히 감정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증액한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세재정]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

〈국세청〉

- '16.10.1.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됨.
-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16.10.1.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개요

□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따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임.

* (철 스크랩)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2 전용계좌 개설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 어디에서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 특정은행 내에서는 여러 개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철 스크랩 전용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제도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가능함. 다만, 전용계좌 신규 개설은 9월 1일부터 미리 할 수 있음.
- 현재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이미 사용 중인 구리 스크랩 계좌(신한은행)만 이용 가능하고,
 - 10월 1일 이후 구리 및 철 스크랩 거래 시 이미 사용 중인 전용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거래은행 변경도 가능함.
- * 전용계좌는 금 전용계좌와 스크랩 등 전용계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 제품(금지금, 고금, 금스크랩)은 금 전용계좌, 구리 및 철 스크랩은 스크랩 등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함.

3 실시간 정산, 세액공제 등 세제상 지원방안

- (실시간 정산) 철 스크랩 매출 시 부가가치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으나,
 - 관리계좌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철 스크랩 관련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였음.
- * 지정 금융회사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서 사업자 전용계좌로 실시간 입금

■ 실시간 부가가치세 정산사례 ■

- ①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출하고 매출세액 5백만 원을 전용계좌로 받음.
 -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사업자 A의 매출세액 5백만 원으로 기록
- ②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입하고 매입세액 7백만 원을 전용계좌로 지급
 -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의 매출세액이 5백만 원이므로, 지급한 매입세액 7백만 원 중 5백만 원을 사업자 A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서 A의 전용계좌로 입금

-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철 스크랩 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 당해 연도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4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 (미사용 가산세)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철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매출 및 매입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됨.
- (매입세액 불공제) 철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지연입금 가산세)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됨.

■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	
[사례 1]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공급가액 20백만 원,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의 철 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 B는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구 분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A (매출자)	• 미사용 가산세 2백만 원 = 공급가액(20백만 원) × 가산세(10%)
사업자 B (매입자)	• 미사용 가산세 2백만 원 = 공급가액(20백만 원) × 가산세(10%) • 매입세액 불공제 2백만 원 = 공급가액(20백만 원) × 부가가치세율(10%)
[사례 2] '16.10.3.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공급가액 20백만 원,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의 철 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 B는 전용계좌를 통해 '16.10.23. 지연입금한 경우	
구 분	가산세
사업자 B (매입자)	• 지연입금 가산세 1만 2천 원 = 부가가치세(2백만 원) × 가산세(3/10,000) × 지연기간(20일)

| 참고 1 | 전용계좌 가입방법

□ 지정 금융회사(7개)

-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 전용계좌 가입방법 및 유의사항

-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 어디에서나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정은 행 1개만 선택하여 개설하여야 함.

* 특정은행 내에서는 여러 개의 전용계좌 개설 가능

- 전용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제도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가능함.

- 다만, 전용계좌 신규 개설은 9월 1일부터 미리 할 수 있음.

□ 구비 서류

구 분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공통 준비서류 (개인·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 사용 인감 ③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① 법인 인감증명서 ② 법인 인감 ③ 법인등기부등본(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개인사업자	① 위임장 ② 개인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① 위임장 ② 법인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신분증

* 일부 은행의 경우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처 : 국민은행(1644-0720), 농협은행(1588-2100), 대구은행(1588-5050), 신한은행(02-2007-9470),
우리은행(1588-5000), 중소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1111)

| 참고 2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Q&A

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 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 철 스크랩 등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 금지금, 고금, 구리 스크랩, 금 스크랩, 철 스크랩

2. 철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는 언제, 어디에서 개설하는지?

- 올해 9월 1일부터 지정은행* 영업점 어디에서나 신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자별로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지정은행 : 국민은행(1644-0720), 농협은행(1588-2100), 대구은행(1588-5050), 신한은행(02-2007-9470),
우리은행(1588-5000), 중소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1111)

3. 거래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거래은행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거래은행 변경 전에 기존 거래은행의 전용계좌를 반드시 해지하여야 새로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4.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 중 어느 한쪽만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되나요?

-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5. 철 스크랩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 수입·수출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전용계좌 결제대상이 아니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국외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이므로 철 스크랩 가액을 전용계좌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6. 고철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도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7.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로 결제하여야 하나요?

-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따라서,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8. 철 스크랩을 거래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 거래시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 대금을 전용계좌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더라도
- 매출자, 매입자 모두 거래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 금 제품과 구리 스크랩, 철 스크랩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 「금 제품」과 「구리 및 철 스크랩」은 모두 매입자 납부 대상이나 법률조항이 달라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금 제품*은 「금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구리 및 철 스크랩은 「스크랩등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 금지금, 고금, 금 스크랩

10. 폐전자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철 스크랩과 금 스크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거래금액 구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 철 스크랩과 금 스크랩 전용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불가피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 거래금액이 더 큰 품목의 해당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대금결제는 반드시 현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 철 스크랩 거래시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나,
- 예외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철 스크랩 등 가액을 결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환어음 ·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제도

12. 매입자 납부 제도가 적용되는 '철 스크랩'의 범위는?

-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이며,
- 관세율표 상 품목번호 “7204” 해당 품목을 의미합니다.

13.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 국세청 누리집(중앙)과 홈택스(하단)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에 대한 제도 소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16 법인세 세무상담 사례 ①

〈국세청〉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 문의내용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이 인정되는 금액은 연간 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연간 천만원이라는 것이 차량 1대 당 천만원인지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한 회사에 천만원인지 문의 드립니다.

2) 또, 만약 회사당 천만원이라면 자동차 보험을 임직원 전용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차량 1대당 천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질의 1)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차량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용을 곱한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제7항 각 호의 비율을 업무사용비용으로 하여 손금인정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개별 차량별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

인정되는 것이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련 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전액 손금 인정되나, 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한도로 하여 손금 인정되는 것입니다.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및 운행기록작성 대상 여부

◎ 문의내용

감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업종 특성상 소속 직원이 지방의 거래처에 자주 출장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015.12.15일 제정된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 소유의 차량과 관련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직원 소유의 차량을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과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답변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은 법인 명의의 차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 소속 직원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직원 차량에 대하여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 작성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면2팀-2632, 2006.12.20.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함.

■ 법인 임차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소득처분

◎ 문의내용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인 임차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연간 8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유보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문의

◎ 답변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상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당해 법인에서 이미 지출되어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유보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비록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였을지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상의 3.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란에 기재하여 이월 손금

으로 관리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임원의 연봉제 전환 시 중간정산

◎ 문의내용

임원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자로 연봉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더 이상 퇴직금을 받지 않는 조건이라 되어 있어서 연봉제 전환 이후에도 임원은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퇴직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인지가 명확치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아니면 연봉제 전환 이후를 기점으로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2015년 12월 31일에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하면서 자금 사정으로 일부만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2016년 1월 중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 답변

질의 1)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의 임원에게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한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의 급여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법인이 그 후 연봉제 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2015년 12월 31일에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2016년 1월에 나머지를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91, 2012.09.28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37, 2010.02.10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으로 봄

* 법인세과-2118, 2015.09.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감가상각의 의제

◎ 문의내용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여, 2014년 귀속 감가상각도 안하고, 감면 및 공제도 안했습니다. 2015년 귀속 결산시, 감가상각이 의제상각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감면도 안받았기 때문에, 의제상각은 아닌가요?

◎ 답변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입니다. 다만, 감면 및 면제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강제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감가상각의 의제) - 의도적으로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

상기와 같이 감가상각의 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이는 법인 스스로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비의 계상 여부나 금액 또는 손금 산입시기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 2014.02.18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도어음의 대손상각

◎ 문의내용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갑은 개인사업자인 을에게 2014.02.20. 3,000만원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
2015.02.15 법원의 지급명령판결 [원금 3,000만원과 법정이자 2,000만원의 지급명령. 당해 법정이자
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촉진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임]

2015.02.20 을은 (주)갑에 2015.06.10. 이 지급기일인 5,000만원 약속어음을 지급함

2015.06.10 (주)갑은 금융기관에 당해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부도 처리됨.

(질의 1) (주)갑이 받은 약속어음 5,000만원은 3,000만원은 매출채권이나, 2,000만원은 법정이자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갑은 부도확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부도어음을 대손처리 할 예정입니다. [을은 현재 개인 파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이 아닌 법정이자에 대한 미수금에 해당하는 부도어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 갑은 부도확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49,999,000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부도어음의 대손요건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도확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결산조정사항들 예를 들어, 사업의 폐지, 사망, 형의 집행 등은 모두 채무자의 무재산의 입증[회수 불가능성의 입증]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만,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확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별도의 다른 요건을 묻지 않고 회사가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질의 1)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어음상의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회수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법인세법 기본통칙 상, 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라 하더라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연히 손금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사례 등에서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은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회계적으로 명백하게 회수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도어음에 대해서도 회수불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수불능인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 대손금의 분할 손금산입 여부

◎ 문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12월말 결산법인입니다. 대손상각과 관련 사항입니다.

당사는 매출처 A사와 2012년부터 발생한 외상채권이 있고 계속 거래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수금해오던 중 2015년 4월에 최종 일부 수금이 있었고, 동시에 2억원의 수표 부도를 맞았습니다.

부도일 현재 부도수표 외 8억원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위 매출채권 10억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다. A사는 부도발생 후 곧 폐업처리 되었습니다.

당사는 위 대손 건에 대하여 법인세 결산 시 2015사업연도에 3억원을 대손상각하고, 2016사업연도에 나머지 5억원을 대손상각 할 예정인데 가능한 것인지 질의 합니다.

1. 2015년 3억과 2016년 5억원을 대손상각하여도 법인세법상 문제점이 없는 건인지?
2. 위와 같이 연도별 부분 대손상각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대손상각 할 수 있는지요?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 인지요?)

◎ 답변

질의 1) 아래의 질의회신사례와 같이 동일한 거래처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 (1) 법인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 및 완성여부는 세법이 아닌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와 같은 상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대한 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전화번호: 132 또는 02-532-0132)로 문의하시거나 동 상법의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835, 2007.05.02.

귀 질의의 경우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만기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별 소멸시효기간이 같은 사업연도에 도래하는 때에는 회수가능연도가 특별히 다른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대손금의 귀속 시기

◎ 문의내용

2012년 매출채권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2013년 12월 조정되었습니다.

당사는 2013년 법인세 신고 시 대손상각비 처리가 누락된 것을 2015년에 발견하였습니다.

(질의) 대손상각비 처리 연도 및 손금산입 귀속시기

1. 2013년 법원 판결이 있었으므로 2013년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대손상각비 처리하여야 함.
2.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대손상각비 손금산입 처리가 가능함.

당사는 2013년 법인세 경정청구가 아닌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싶습니다. 이에 법률상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답변

질의의 경우, 대손사유가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등 신고조정 사항인지 결산조정사항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1) 신고조정 사항이라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경정청구 가능)으로 하는 것

이며,

(2) 결산조정 사항이라면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경정청구 불가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설립전에 발생한 손익

◎ 문의내용

과일 등 농산물을 필리핀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설립일은 2015년 11월 10일인데 그 전에 7-8월경에 필리핀에 현지 간이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을 고용하여 통역 및 수입업무와 관련된 지리안내 등을 도움 받으면서 인건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인 설립전에 지출한 간이사무소 설치비용 및 현지인 인건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비용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09-399, 2009.12.04)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임. 조세 회년

부동산의 증여와 세금

〈국세청〉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01. 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주식 상장·합병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02. 증여세 면제 · 비과세

1.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합니다.
- ◆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5년간 1억원 한도).
 - ※ 자경농민 :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함
 - ※ 영농자녀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
 - ※ 농지 등의 범위 : 농지(40,0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의2)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가징수 됩니다(추가징수 시 이자상당액 포함).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 ◆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축될 때에는 증여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 ◆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

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장애인의 범위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만료 시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 신탁이익이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3)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영업취소 등이 되어 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서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
- ◆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영 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4) 신탁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03. 증여세 계산방법

- ◆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begin{aligned} \text{증여재산} - \text{증여재산공제액} &= \text{과세표준}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산출세액} \end{aligned}$$

1. 증여재산의 평가

-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 감정가액의 평균액 · 수용가액과 동일 ·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 감정가액의 평균액 · 수용가액 등을 포함합니다(당해재산 매매 등 가액 우선적용).
-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 및 주택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 주택 이외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

년 산정 · 고시하는 가액)

2. 증여재산공제

◆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자	공 제 금 액	비 고
배우자	6억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5백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5백만원

* 기타친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

◆ 계부 · 계모(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창업자금을 사전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특례세율(10%)을 적용합니다.

◆ 가업승계주식 등을 사전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합니다.

▶ 사례

- ①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1천만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10 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5,000 만원만 공제함
- ② 성인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1천만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5,000 만원을 공제함
- ③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000 만원을,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1,000 만원을 공제함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중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父는 생존)

① 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text{총증여재산가액}} \times \frac{40}{100} - \text{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② 그 외의 경우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은 증여 재산가액}}{\text{총증여재산가액}} \times \frac{30}{100} - \text{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증여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함

〈 증여세 세율 〉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증여세 계산사례

2016년 2월 1일 아버지로부터 1억 7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성년임)

〈계산내용〉

- 증여재산 공제 : 5,000만원
- 과세표준 : 1억 2,000만원 (1억 7천만원 - 5,000만원)
- 산출세액 : 1,400만원 (1억 2,000만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 납부할 세액 : 1,260만원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04. 증여세 신고 · 납부 요령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또 증여세를 신고만 하

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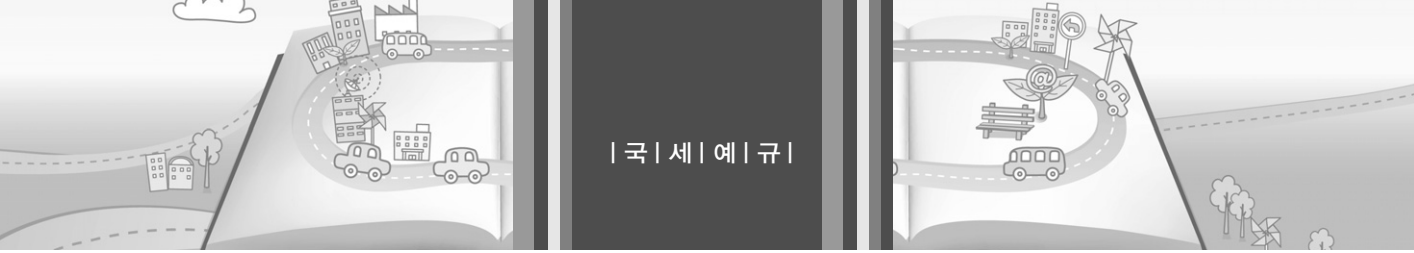
-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2. 연부연납

-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합니다.
- ◆ 연부연납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2011년부터는 기한 후 신고 시도 가능) 또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담보가 100%보증되는 경우 신청만으로 가능
 -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세금부담이 가벼워집니다.

- ◆ 제출할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내면 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입증서류
 -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기타 첨부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 주민등록등본,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등 재산평가 관련서류
- ◆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외납]



분할존속법인이 적격합병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포괄승계 여부 등

분할존속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질의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해운사업부(탱커 사업부, 가스 사업부, 벌크 사업부)와 지분율 50% 이상의 해외 자회사 주식 전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면서
 - 분할존속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지주회사인 Holding Co.(합작법인)에 피합병법인으로 적격흡수합병될 예정임
- 질의법인은 해운업을 영위하는 특성에 따라 핵심자산은 선박이며, 국제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등 계약에 따라 취득한 선박과 이의 조달자금인 선박부채(장기미지급금)을 아래 예시와 같이 계상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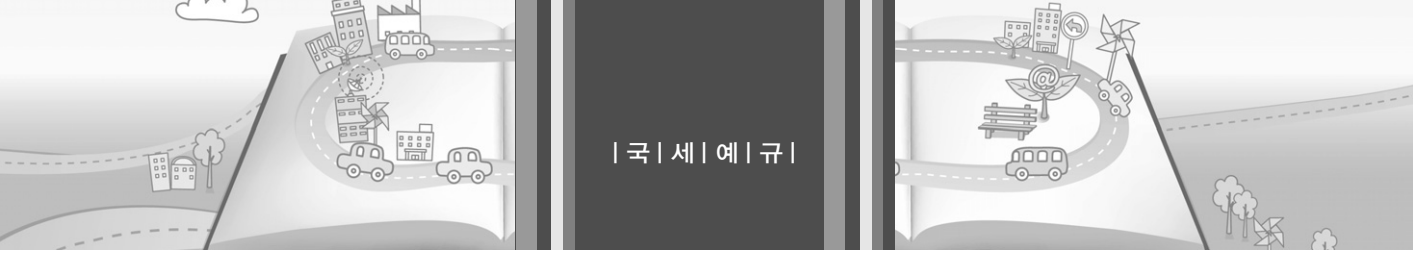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자산(선박)			부채(장기미지급금)		
취득가액	상가누계액	장부가액	장기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 발행차금	장부가액
300	△50	250	250	△25	225

- 분할신설법인은 상기 물적분할에 따라 해운사업부의 주요 자산인 선박자산과 선박부채(장기미지급금)를 포괄승계받을 계획임
- 또한, 물적분할 과정에서 질의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자 지분포함 최대주주)으로서 보유한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주식(일부는 6개월 이상 3년 미만 보유)(이하 “본 건 해외자회사 주식”)을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계획임

〈질의내용〉

(질의 1)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지주회사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아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비적격 물적분할시 인적분할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업권 성격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분할매수차손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선박부채의 시가 평가방법과 시가평가에 따라 발생한 유보금의 추인방법

회신(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00, 2016.06.24.)

귀 질의 1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단서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귀 질의 2의 경우,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귀 질의 3의 경우,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선박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금액은 매년 선박부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시점에 관련 유보금액을 추인(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관계조문참조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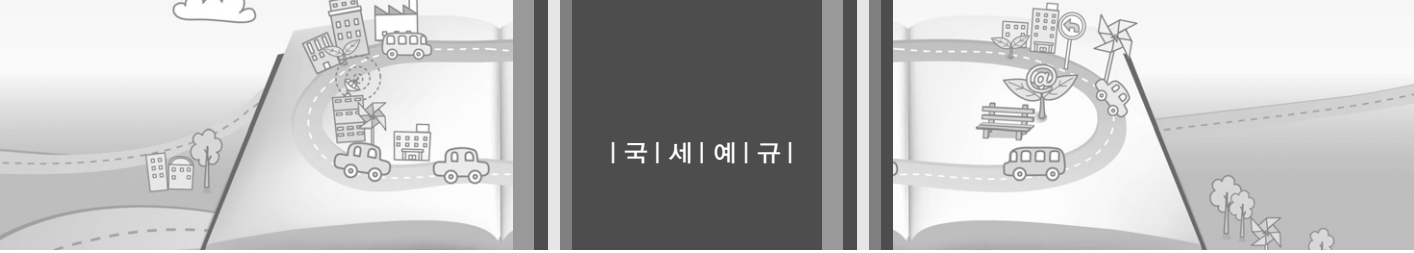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에 보전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이익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동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

〈사실관계〉

○ 배당지급법인은 거액의 감자차손으로 인하여 2014.12.31. 기준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 상장회사인 배당지급법인은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당할 필요가 있었던 바,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먼저 감자차손을 보전한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한 뒤 감액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음

① 배당지급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억원)을 감자차손 보전에 우선 사용하고, 잔여 감자차손 금액(*, ***억원)은 상법 제460조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억원)과 주식발행초과금(***억원)을 재원으로 보전함

② 다음으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주식발행초과금 중 **억원을 배당함

○ 감자차손 보전, 본 건 감액 및 본 건 배당은 2015.*.**. 이사회에서 결의되었고, 2015.*.**. 주주총회 의결을 거쳤음

○ 질의법인은 본 건 배당에 따라 2015.4월에 배당금을 지급받음

〈질의내용〉

○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에 보전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신(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4, 2016.07.28.)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2016.0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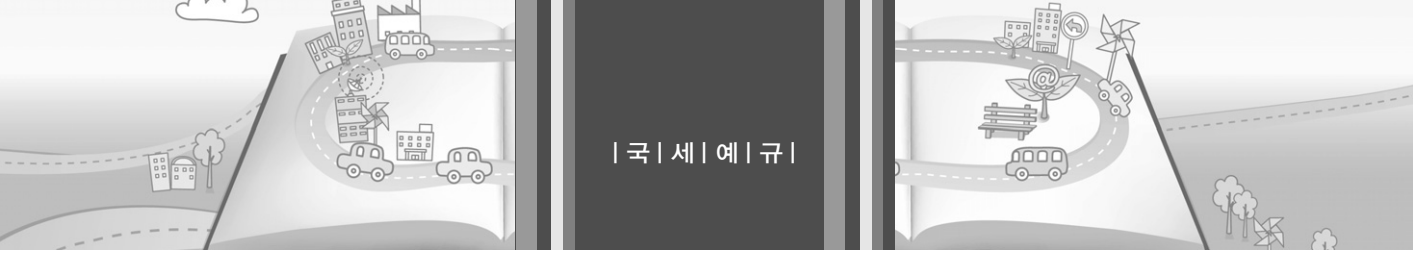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계조문참조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

AA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



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

질의

〈사실관계〉

○ △△시의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동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컨소시엄(1차, 2차)을 구성

– 동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시에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 입주심사*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함(**년 **월, **년 **월)

*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제의가 반영되어 입주기업으로 선정

○ 입주계약서에는 입주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및 지역사회 이미지를 위하여 △△시 소유의 부지 상에 △△컨소시엄이 문화예술공연 건물(△△아트센터) 및 △△사이언스홀(가칭, 이하 “공공기여시설”이라 함) 등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갖되 1회에 한하여 유상사용을 조건으로 계약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 영위할 업종, 분양받을 토지면적, 입주시설(연구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기전실 등)의 건축면적 및 차공·준공예정일(제1조), 입주계약내용의 준수의무(제12조 또는 제14조) 등을 약정

○ 상기 입주계약에 따라 △△컨소시엄은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토지 분양계약을 체결

○ ****년 **월 **일 입주기업(△△컨소시엄)과 △△시는 기부채납된 공공기여시설 관리운영에 관하여 합의서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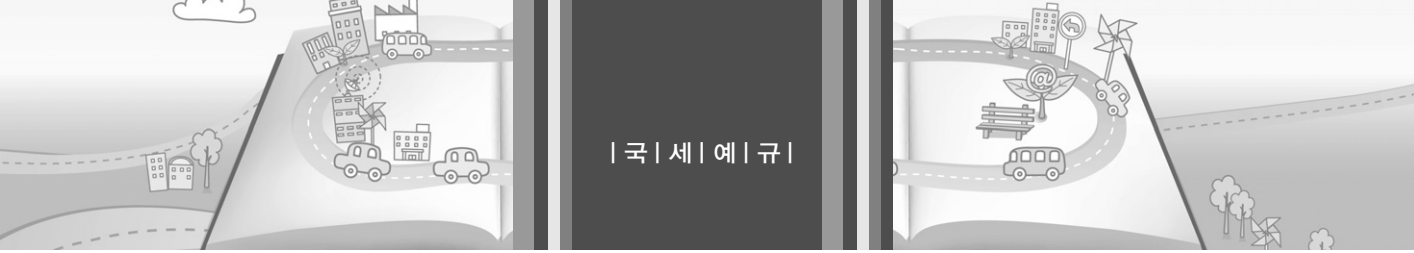
〈질의내용〉

○ △△1차·2차 컨소시엄이 △△일반산업단지 입주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서에 기한 입주계약체결 조건에 따라

– △△시 소유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이나 전시·관람 등을 위한 공공시설(△△아트센터, △△사이언스홀)을 신축, 준공 직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1회에 한해 계약갱신 가능) 무상 사용하는 경우 –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취득비용의 법인세법 상 처리방법?

회신(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08, 2016.07.29.)

내국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다른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와 연구시설 등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시 토지 상에 문화예술공연 등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되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권리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관계조문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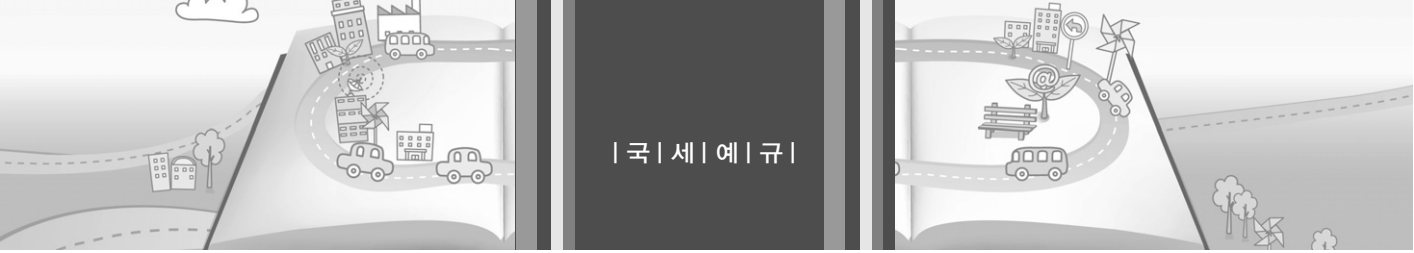
질의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은 남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 백화점등에 입점하여 매장을 설치하고
 - 각 판매장을 관리하고 (주)□□□□ 제품을 판매하는 관리자에게 판매액에 따라 계약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201*년 세무조사시 동 판매수수료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매장관리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 일부 매장관리자(갑 외 3인)는 질의법인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청구액 ***, ***, **원의 35%만 질의법인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서울민사지법 단독 ***호 2015가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주)□□□□ 배상액 4인 **, ***, ***원)
- 질의법인은 법원판결에 따라 동 손해배상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매장관리자들과는 상호합의에 따라 동 법원판결을 준용하여 질의법인 배상책임 해당분을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하고자 함

〈질의내용〉

- (질의 1) 법원에서 질의법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손해배상금액(35%)을 원고에게 지급시 손금가능 여부
- (질의 2)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현재도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에게 선지급한 금액(부가가치세 추징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질의1)의 손해배상판결문을 준용하여 질의법인 배상책임부분(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동 부담금액을 합의시점(2016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 가능한지 여부?



회신(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74, 2016.08.16.)

백화점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면서 매장관리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일부 매장관리자가 수수료 지급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매장관리자에게 동 법원 판결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관계조문참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학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질의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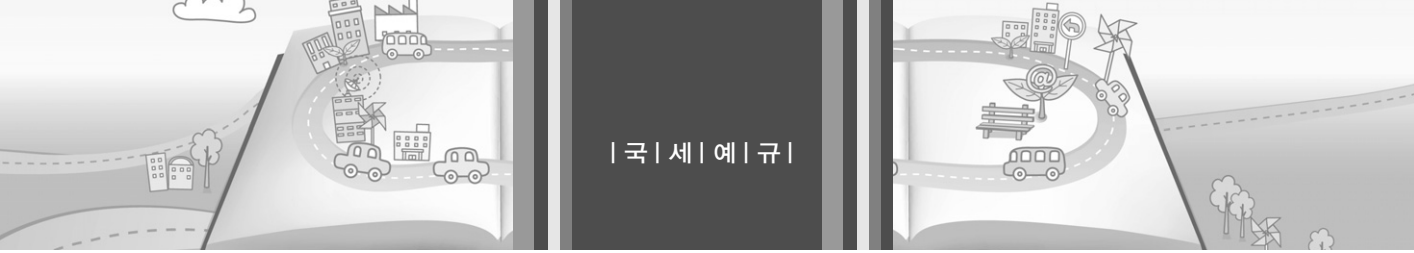
○ 학교법인 □□학원(이하 “질의학원”)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을 2016. **월 매각하였음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회신(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92, 2016.08.16.)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관계조문참조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중기법상 중소 벤처기업이 조세법상 중소기업 미해당시 세액감면 적용 안됨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은 2009. **. **. 설립되어 △△△△△ 개발 및 퍼블리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창업 후 3년 이내인 2012. **. **.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음

○ 2014년에 최초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였고, 자회사 지분(100%)을 취득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유예기간 적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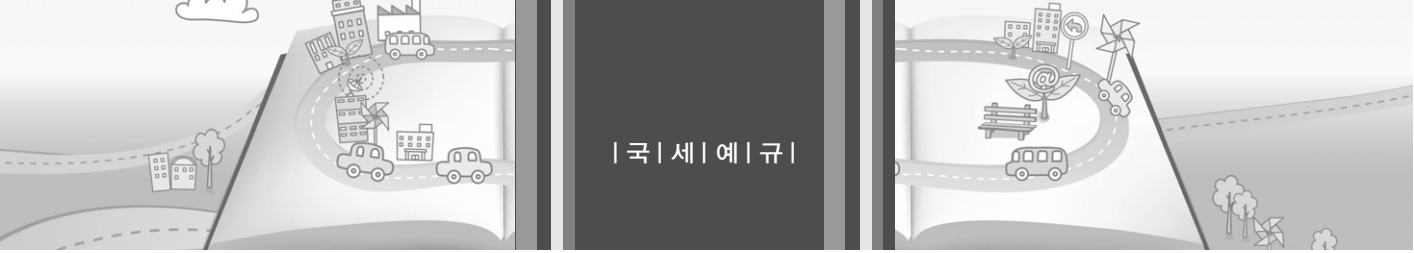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2조의2의 벤처기업 요건은 모두 충족함

〈질의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08, 2016.08.1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관계조문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의 자회사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

질의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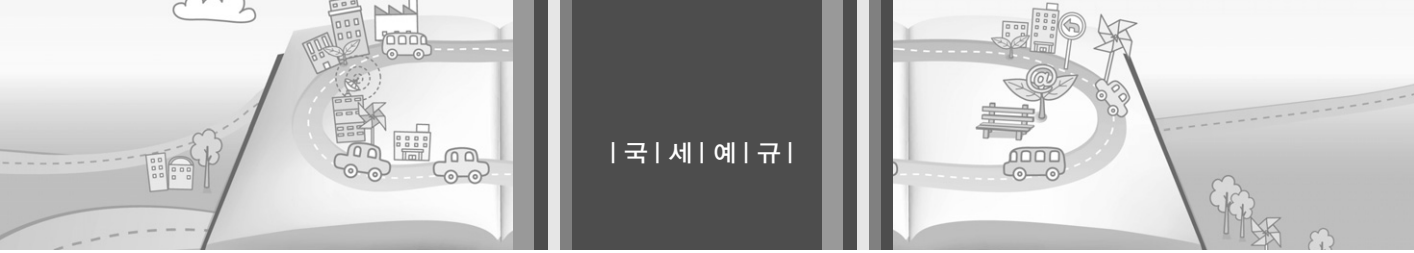
- DH사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HM(이하 “당사”)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공개매수하여 당사 주식 33%, HL사 주식 34%를 보유함
- 당사는 DH사로부터 HL사 주식 34%를 현물출자 받아 2015년 지주회사로 전환함
 - HL사만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임
- HL사를 당사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규정을 충족한 DH사는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을 신청함
 - 이에 따라 당사는 DH사가 과세이연 신청한 주식부분에 대하여 자산조정계정으로 신고·관리하고 있음
- 당사의 비상장 자회사인 U법인은 2016년 중에 다른 비상장법인인 T법인에 흡수합병(적격합병)되어 소멸될 예정임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에서’ 자회사가
 - 현물출자로 인하여 자회사의 요건을 갖춘 특정 내국법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지주회사의 전체 자회사를 말하는지?

회신(서면-2016-법인-3026, 2016.07.1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계조문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상장폐지된 중견기업이 재상장된 경우 '최초 신규상장 중견기업' 해당 안됨

2015년 이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되었던 중견기업이 2015년에 다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2015. **.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으로 - 197*. **. **.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하여 198*. **. **. 상장폐지한 이력이 있음

〈질의내용〉

○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 2015년 전에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하였다가 상장폐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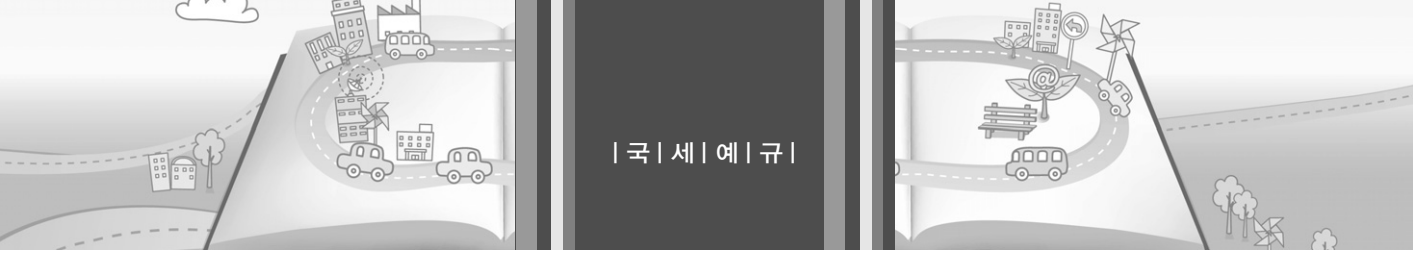
회신(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2, 2016.07.07.)

2015년 이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함)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되었던 중견기업이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관계조문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 에누리



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는 ★★(이하 “판매대행업자”)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행업자에게 화장품류 상품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자로
 - 판매대행업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대행업자의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 판매대행업자로부터 판매 성사분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을 약정한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음
- 신청인은 최근 판매대행업자로부터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 정책 도입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해당 정책이 반영된 수정된 계약서에 따라 판매대행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신청인과 판매대행업자가 체결할 수정된 판매/홍보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쿠폰 적용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액만큼 상품 판매가격이 할인되고
 - 해당 상품 판매가격 할인액 중 판매대행업자가 부담한 할인액은 판매대행업자가 수령할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됨

〈질의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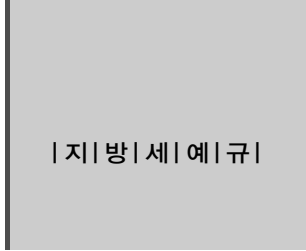
-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할인쿠폰을 발행·적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 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 2016.07.29.)

상품판매를 위·수탁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수수하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여 쿠폰 적용에 대한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관계조문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조세
특례



■ 법인합병시 최소납부세제 적용과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서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합병의 경우 같은 법 제57의2에 의해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해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질의

합병의 경우 무상증여 세율인 3.5% 중 지방세법에서 2%의 세율특례를 적용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서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전액 감면받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서 규정한 최소납부세액 부과를 위한 산출세액의 기준이 되는 적용세율 여부?

회신(지방세특례제과-1534, 2016.07.0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서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합병의 경우 같은 법 제57의2에 의해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해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분양계약 승계하여 산업단지 입주 경우 감면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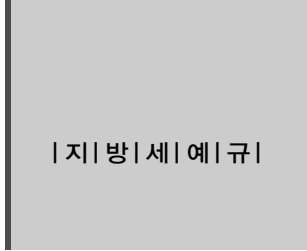
감면 부칙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초 계약자의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입주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

산업단지 입주예정인 A법인이 2015.12.31. 이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1월 이후 계약의 권리의무를 B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을 승계한 B법인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부칙 제25조 적용대상 해당 여부?

회신(지방세특례제과-2471, 2016.09.09.)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대수선의 경우 100분의 2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에서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기의 감면부칙 제25조의 입법취지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입주 기업들의 세부담 증가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기존 또는 2015년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취득하는 산업단지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 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감면 부칙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사업시행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초 계약자의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입주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학교용 부동산 수익사업 관련 취득세 추징여부

학교법인이 체육관을 증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에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더라도 추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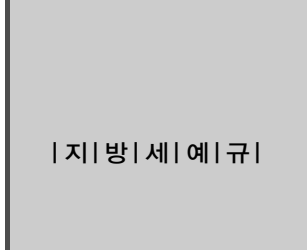
질의

학교법인이 체육관을 증축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2년간 직접 사용 후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531, 2016.07.0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은 학교,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 2004.5.28.선



고, 2003두7392),

–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독립된 부과사유로 규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면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다음 매각·증여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는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당해 사업의 용도에 사용하면 감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 학교 등이 감면된 부동산을 당해 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유예기간 동안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유예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추징하고,

– 일정한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 후부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두26678, 2013.3.18. 선고 참조)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체육관을 증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에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추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고유업무 사업장은 주민세 균등분 감면대상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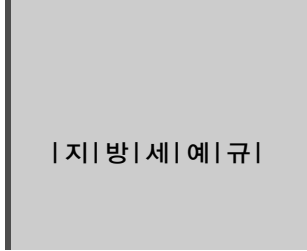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업무 사업장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법인의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주민세 균등분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동일 장소에 법인의 고유업무를 위한 사업장을 두는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면제 여부?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412, 2016.06.2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5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



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건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장소에 법인의 고유 업무를 위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민세 균등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업무 사업장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법인의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주민세 균등분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전 토지 취득시 감면여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서 설립승인을 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질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토지를 취득하고 이후 설립승인을 받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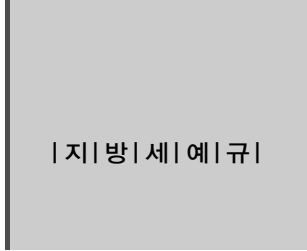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1471, 2016.06.28.)

○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2001년도 감면조례에서는 감면대상을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였으나, 2002년 감면대상을 "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설립자"로 개정하였으며, 이후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로 이관(2012.1.1.시행)되면서 감면주체를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변경되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을 고려해 볼 때,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서 설립승인을 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미술관 설립자가 아닌 대표자 명의 부동산 감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박물관 등록 시 취득자가 설립자와 대표자로 달리 등록하여 설립하였



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각각 설립자와 대표자로 미술관 등록 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지방세특례제도와과-1468, 2016.06.27.)

○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같은 법 제1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박물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당해 부동산의 사용목적 이 평생교육시설로서 미술관으로 사용이라고 규정하였을 뿐 그 외 감면대상에 대한 주체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상에서 설립자와 대표자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와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박물관 등록 시 취득자가 설립자와 대표자로 달리 등록하여 설립하였 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면제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판결에 의한 소유권 말소 경우도 추징대상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추징대상이라 판단된다.

질의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추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지방세특례제도와과-2468, 2016.09.09.)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 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단서규정은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익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후에 매각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단서에 규정된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한편, 상기 추징대상인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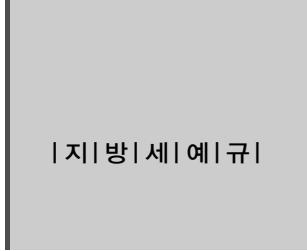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부동산 증여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에 의하여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라면 추징대상이라 판단된다.

▣ 종업원분 주민세 세율을 인하할 경우 '감면'에 해당 안됨

종업원분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조례로 50%로 인하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 감면조례 등을 통해 세율을 개별적 조문을 경감하는 탄력세율 적용일 뿐으로 '세율의 경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

종업원분 주민세의 표준세율을 조례로 50%로 인하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의 경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469, 2016.09.09.)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국가정책 또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세액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전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그 감면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의 탄력세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로 정한 표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로서, 국내외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신축성 있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표준세율을 정책목적에 따라 임시로 적용하는 세율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의 경감'이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 감면조례 등을 통해 세율을 개별적 조문을 경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세율의 경감'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 이전 공공기관의 증자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법인등기'에 관해 지방세 관계법이 다른 법리를 두지 않은 이상 이전 공공기관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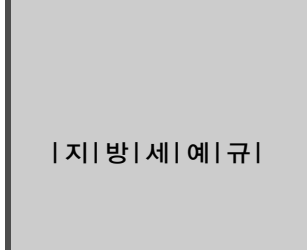
질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등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전 공공기관의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472, 2016.09.09.)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2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



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두45694, 2015.9.24.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등기'라 함은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건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 중 '법인등기'라 함은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 등기, 사무소이전 및 해산등기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법인등기'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는 자본의 증자인 '변경등기' 사항으로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조세위탈

— 당좌거래 정지자 —

9/21

(주)우리선진	부산사상구사상로
보람텍(주)	울산울주군웅촌면고연로
서흥인테크(주)	경기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박웅	경남김해시울하3로

9/22

최선태	강원횡성군둔내면
-----	----------

9/26

(주)동원FOS	경기수원시권선구정조로
(주)수영물산	서울송파구중대로
(주)퍼모스트통상	경기이천시마장면서이천로

9/27

(주)신흥파이프	경남함안군칠원읍갈티길
(주)한영물산	서울송파구양재대로

서울외국환중개(주) 기준 · 재정환율

국 가 명	통 화 명	9/22(목)	9/23(금)	9/24(토)	9/26(월)	9/27(화)	9/28(수)
미 국	달 러 화	1,116.80	1,103.10	토요일휴무	1,104.20	1,106.90	1,103.50
	위 안 화	166.97	165.33		165.37	165.66	165.05
일 본	엔화(100)	1,112.46	1,094.29		1,093.43	1,103.31	1,099.71
유 로	유 로 화	1,249.48	1,236.63		1,240.51	1,245.37	1,237.96
영 국	파운드화	1,455.30	1,442.74		1,432.81	1,435.59	1,436.59
캐 나 다	달 러 화	853.43	845.74		838.93	837.01	835.89
스 위 스	프랑 화	1,147.44	1,138.39		1,139.00	1,142.19	1,136.98
호 주	달 러 화	852.51	843.65		840.30	845.01	846.00
뉴 질 랜드	달 러 화	820.29	806.75		798.34	805.10	805.39
홍 콩	달 러 화	144.01	142.23		142.37	142.72	142.29
대 만	달 러 화	35.84	35.15		35.21	35.21	35.13
몽 골	투그릭화	0.50	0.49		0.49	0.49	0.49
카 자흐 스 탄	텡 게 화	3.30	3.26		3.27	3.28	3.28
태 국	บาท 화	32.19	31.87		31.89	32.00	31.88
싱 가 포 르	달 러 화	825.33	813.59		812.18	813.75	811.70
인 도 네 시 아	루피아화(100)	8.50	8.43		8.44	8.50	8.52
말 레 이 시 아	링 깃 화	269.82	268.49		268.43	268.08	267.55
필 리 핀	페 소 화	23.46	23.06		22.95	22.90	22.84
베 트 남	동화(100)	5.00	4.94		4.95	4.96	4.94
브 루 나 이	달 러 화	825.30	813.62		812.15	813.72	811.76
인 도	루 피 화	16.73	16.55		16.55	16.62	16.61
파 키 스 탄	루 피 화	10.67	10.53		10.54	10.57	10.53
방 글 라 데 시	타 카 화	14.24	14.04		14.06	14.10	14.04
멕 시 코	페 소 화	56.63	56.23		55.79	55.64	56.90
브 라 질	헤알 화	347.83	342.57		340.42	341.45	341.19
아 르헨티나	페 소 화	73.74	72.77		72.90	72.69	72.23
스 웨 덴	크로나화	130.51	129.09		129.37	129.57	128.38
덴 마 크	크로네화	167.63	165.87		166.41	167.13	166.11
노 르 웨 이	크로네화	135.37	135.71		136.19	136.50	136.05
러 시 아	루블 화	17.49	17.32		17.24	17.28	17.28
형 가 리	포린트화	4.05	4.04		4.05	4.06	4.02
폴 란 드	즈위티화	291.28	288.94		288.45	289.84	289.04
체 코	코루나화	46.24	45.76		45.91	46.09	45.81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화	297.76	294.12		294.38	295.10	294.16
카 타 르	리알 화	306.69	302.92		303.22	303.97	303.03

※ 당일 외환기준율 내용은 본사사이트 www.intax.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 가 명	통 화 명	9/22(목)	9/23(금)	9/24(토)	9/26(월)	9/27(화)	9/28(수)
이 스 라 엘	세 켈 화	296.63	293.38	토요휴무	293.63	295.17	294.50
요 르 단	디 나 르 화	1,576.29	1,557.72		1,557.29	1,562.31	1,557.52
쿠 웨 이 트	디 나 르 화	3,705.99	3,659.07		3,661.50	3,670.46	3,661.25
바 레 인	디 나 르 화	2,962.41	2,926.31		2,928.99	2,936.15	2,927.13
아랍에미리트	디 르 함 화	304.05	300.32		300.62	301.35	300.44
터 키	리 리 화	377.90	374.87		372.14	371.29	371.03
남아프리카공화국	랜 드 화	82.25	80.88		80.36	80.74	82.00
이 집 트	파 운 드 화	125.77	124.22		124.35	124.65	124.27

관 세 과 세 환 율					
통 화 별		2016.9.25~ 2016.10.1	통 화 별		2016.9.25~ 2016.10.1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 Dirham	306.41	일본	Yen	11,0962
오스트리아	Schilling	91.42	한국	Won	1
호주	Australian Dollar	852.48	쿠웨이트	Kuwaiti Dinar	3,734.51
벨기에	Belgian Franc	31.18	카자흐	Kazakhstan tenge	3.32
바레인	Bahraini Dinar	2,985.49	몽골	Tugrik	0.5
브라질	Brazilian Real	347.55	멕시코	Mexican Peso	57.15
캐나다	Canadian Dollar	856.13	말레이시아	Malaysian Ringgit	272.34
스위스	Swiss Franc	1,152.82	네덜란드	Netherlands Guilder	570.87
칠레	Chilean Peso	1.68	노르웨이	Norwegian Krone	136.34
중국	Yuan Renminbi	168.49	뉴질랜드	New Zealand Dollar	822.68
체코공화국	Czech Koruna	46.62	필리핀	Philippine Peso	23.54
독일	Deutsche Mark	643.22	폴란드	Polish Zloty	293.17
덴마크	Danish Krone	168.8	러시아 연방	Russian Rouble	17.49
스페인	Spanish Peseta	7.5609	사우디아라비아	Saudi Riyal	300.07
유 로	유로화	1,257.96	스웨덴	Swedish Krona	131.39
핀란드	Markka	211.58	싱가포르	Singapore Dollar	827.47
프랑스	French Franc	191.78	슬로바키아	Slovak Koruna	41.84
영국	Pound Sterling	1,466.43	태국	Baht	32.37
홍콩	Hong Kong Dollar	145.08	터키	Turkish Lira	379.77
헝가리	Forint	4.08	대만	New Taiwan Dollar	35.84
인도네시아	Rupiah	0.0856	미국	US Dollar	1,125.1
인도	Indian Rupee	16.85	베트남	Dong	0.0504
이탈리아	Italian Lira	0.6497	남아프리카공화국	Rand	81.33

※ 당일 외환기준을 내용은 본사사이트 www.intax.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9월 총목차

9월 1일

■ 포커스

세액공제 등 중견기업 세제지원 확대 / 4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이 공급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허용 / 4
국세청·중기청, 공동으로 의료기기 수출업체 지원 나서 / 4
회계제도 개혁안, 금년 하반기 중 발표 계획 / 26

■ 세무자문

해외법인 지급보증 / 6
수입후 재수출시 관·부가세 / 6

■ 세제동향

2016년 세법개정안 ② / 8

■ 국세예규

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해당 여부 판단 / 27
K-IFRS 적용 법인의 임대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적용방법 / 27
부지개발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 29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30
제조업과 물류산업 겸업법인 물류센터의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판단 / 32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의 손금산입 / 32
선 지급한 토지분양대금과 관련한 세무처리 방법 / 34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확정수익보장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 여부 등 / 35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 / 36

■ 심판결정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 / 37
지목변경일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지역에서 사업시행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 37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해당 여부 판단 / 38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세 면제 / 39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 40

■ 노무정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통상임금> ① / 41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8.18.~2016.8.24.) / 47
관세과세환율(2016.8.21.~2016.8.27.) / 48

■ 안내

8월 총목차 / 49

9월 8일

■ 포커스

결제대금 중 포인트·증정상품권 분은 부가세법상 에너지액에 해당 / 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 등 세법개정안 일부 수정 / 5
경형자동차 유류세·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찾아가세요~ / 5

■ 세무자문

기타소득 및 일용근로소득 구분 / 6
중국업체와의 국내광고용역제공 관련 부가세 외 / 6
타사 설비투자자산 이용 및 그에 대한 대가 관련 세무 / 7
분양 중도금 매출신고시점 / 9

■ 세제동향

2016년 세법개정안 ③ / 10

■ 국세예규

국제협력단 지원금은 손익이 아니며, 초과부담액은 비지정기부금 / 26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 매출액등 산정방법 / 27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 매출에너지 / 29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30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31
국내외의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 32
과세·면세사업등록정정 전에 면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 33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34

■ 심판결정례

조특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자진신고를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 / 35
추가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을 변경등록 아니하였다 하여 추징은 잘못 / 36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 추징한 처분은 잘못 / 36

■ 노무정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통상임금> ② / 38

■ 개정법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43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8.25.~2016.8.31.) / 49
관세과세환율(2016.8.28.~2016.9.3.) / 50

9월 22일

■ 포커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

9월 총목차

일까지 신청 가능 / 4

9월 재산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4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빠른 시일 내 기한후 신고 당부 / 5

■ 세무자문

해외현지법인의 자산 매각시 세무 이슈 / 6
재해방지용 산림녹화공사 비용 취득세 / 7
거래처에 자금대여후 이자 대신 매입단가 조정시 세무처리 / 7
현장실습비의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 / 8
중국법인 국내지점 보유 컨테이너 매각시 세무 / 8

■ 회계자문

해외거주인 자문료 세무처리 / 9
공동으로 출원한 특허 관련 회계처리 / 10
유상감자 법무비용 계정처리 / 10
구분등기에 따른 비용처리 / 10

■ 인사

2016년 국제청 사무관 승진내정자 명단 / 11

■ 세제동향

2016년 세법개정안 ④ / 14

■ 국세예규

신주인수권의 상장법인 주식 전환시 전환전 1주당 평가액 / 29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시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관계사에서의 근무기간 통산 / 30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 31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32
휴폐업신고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의미 / 33
변제공탁금의 손익귀속시기 등 / 35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대상 여부 / 36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의 자회사 범위 / 37
수정·기한후신고 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가능 여부 / 38

■ 지방세예규

기업부설연구소 재산세 경감세율 특례 적용 / 39

■ 판례정보

최신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포인트와 증정상품권의 예누리) / 41

■ 노무정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평균임금> ① / 45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9.1.~2016.9.7.) / 49
관세과세환율(2016.9.4.~2016.9.10.) / 50

■ 포커스

비상장기업 근로자도 걱정 없이 우리사주 살 수 있게 된다. / 4
10월부터 철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 이용해야 /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보유자, 이달말일까지 신고해야 / 5

■ 세무자문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세무처리 / 6
부가세 가산세 질의 / 7
대손처리 싯점 / 8
본사 방문자에 제공하는 주차장 쿠폰 구매 부가세 공제 / 9
채권·채무 상계 시 세무 / 9

■ 회계자문

특허권의 자본적지출 / 10
법인의 아파트 취득시 회계처리 / 11
전환사채 전환시 단주대금의 회계처리 방법 / 11

■ 세무정보

201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개요 / 12

■ 세제동향

2016년 세법개정안 ⑤ / 16

■ 국세예규

희망퇴직자에게 퇴직후 일정기간 지급하는 학자금, 의료비 등의 소득구분 / 32
건설업 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 / 33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의 주식 처분에 따른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 / 35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외 / 36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의 접대비 해당 판단 / 37
선원이 어획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 38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 39
계속적·반복적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 40

■ 심판결정례

테크가 기등은 있지만 지붕은 없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에 해당 안됨 / 41
임대주택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 / 41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 42
종교시설에 요가교실을 운영한다하여 취득세 추징은 부당 / 43

■ 노무정보

근로기준법 질의회시<평균임금> ② / 44

■ 기타

기준·재정환율(2016.9.8.~2016.9.21.) / 47, 49
관세과세환율(2016.9.11.~2016.9.24.) / 48, 50

9월 29일